##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87

발의연월일: 2022. 5. 4.

발 의 자:오영환·김민철·김병기

김주영 · 김홍걸 · 문정복

박성준 · 서영교 · 송갑석

윤준병 · 이용우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금고의 임원 결격 사유,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등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자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접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,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 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고,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및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함(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12호).
- 나.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로 한정함(안 제22조제3 항).
- 다.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·운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7조제3항신설).
- 라.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금고 또는 중앙회에 해임,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(안 제74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제85조제3항의"를 "제85조제3항 또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9조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"개선(改選)을"을 "해임요구를"로, "날"을 "날(해임요구의 경우에는 해임이 요구된 날을 말한다)"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"회원이나"를 "회원(업무구역에 속한 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누구든지"를 "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며, 후보자는"으로 한다.

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·운용할 수 있다.

제74조제4항 중 "금융감독원장"을 "금융감독원장,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"으로 한다.

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

런 임직원에"를 "관련 임직원에"로 하고, "하게 할"을 "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의 해임이나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제74조의2제1항제1호 중 "개선,"을 "해임, 6개월 이내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임직원의 개선 또는"을 "직원에 대한"으로, "임직원은"을 "직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세부기준은"을 "세부기준 및절차는"으로 한다.

제79조제7항 전단 중 "감독·검사 결과, 금고에 대한"을 "감독·검사 결과,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"으로 한다.

제79조의5제1항제1호 중 "개선"을 "해임요구"로 한다.

제83조 본문 중 "개선·직무정지"를 "해임요구·직무정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(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다	제2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	
없다. 다만, 제18조제3항에 따른	
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	
아니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	8. 제85조제3항 또는 「공공단
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	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제58조, 제59조, 제61조부터
	제66조까지에 규정된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	12
하는 금융 관련 법령(이하 "금	
융관계법령"이라 한다)에 따	
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[임원	
에 대한 <u>개선(改選)을</u> 포함한	<u>해임요구를</u>
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된	
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	
임된 <u>날</u> 부터 5년이 지나지 아	<u>날(해임요구의 경우에는</u>
니한 사람	해임이 요구된 날을 말한다)-
12의2. ~ 18. (생 략)	12의2. ~ 18. (현행과 같음)

- ② ~ ④ (생 략)
- 제22조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 ① 저 (생 략)
  -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 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 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  - 1. 회원이나 그 가족(회원의 배 우자,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회원 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에게 금품・향응, 그 밖의 재 산상의 이익이나 공사(公私) 의 직(職)을 제공, 제공의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
  - 2. ~ 5. (생략)
  -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④ (생략)

제67조(사업) ① • ②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22조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 ①
(현행과 같음)
②
1. 회원(업무구역에 속한 자로
서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이
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
- 10/ 11/11 0 包 包 1 双1. /11.

-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후보자에 한하며, 후보자는 ---
  - 1. ~ 3. (현행과 같음)
  - ④ (현행과 같음)

제67조(사업) ① • ② (현행과 같 음)

<신 설>

③ ~ ⑥ (생 략)

제74조(감독 등) ① ~ ③ (생 략) 저

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 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금융감독원장</u>에게 지 원요청을 할 수 있다.

#### ⑤ ~ ⑦ (생 략)

제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 전분)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
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
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자금을 조성·운용할 수 있
<u>다.</u>
$\underline{4}$ $\sim$ $\underline{7}$ (현행 제3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74조(감독 등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<b>4</b>
금융감독원장, 예금보
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
<u>정하는 기관장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1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
변) ①
관련 임직
<u>원에</u>
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
회에 조치를 요구할 다만,

제1호의 해임이나 제2호의 경우

- 임원에 대해서는 <u>개선</u>, 직무 정지, 견책 또는 경고
- 2. (생략)
- ② 제1항(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.
- ③ ④ (생 략)
-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9조(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 도·감독) ① ~ ⑥ (생 략)
  -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<u>감독·</u> 검사 결과, 금고에 대한 조치 또 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 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 용한다. 이 경우 "주무부장관" 은 "회장"으로, "금고 또는 중앙 회"는 "금고"로 본다.

를 요구하여야 한다.
1 <u>해임, 6개월</u>
이내의
2. (현행과 같음)
②
<u>직원에 대</u>
<u>한</u>
직원은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세</u>
<u>부기준 및 절차는</u>
제79조(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
도·감독) ① ~ ⑥ (현행과 같
승)
⑦ <u>감독·</u>
검사 결과, 금고 또는 그 임직원
<u>에 대한</u>
<u>.</u>

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

#### ⑧ (생략)

- 제79조의5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) ① 주무부장 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한다.
  - 제74조의2제1항(제79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른 임원의 <u>개선</u> 또는 직무정지
  - 2. (생략)
  - ② (생 략)
- 제83조(청문 등)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, 제74조의3제1항제3호, 제79조제 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 1항제1호·제74조의3제1항제3 호,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, 관계 임원의 <u>개선</u> · 직무정지를 명하거나, 특별자

⑧ (현행과 같음)
제79조의5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
명령내용의 통보) ①
<u>.</u>
1
<u>해임요구</u>
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83조(청문 등)
해임
<u>요구·직무정지</u>

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74조 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 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 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 만,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